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 완화에 기여-

ISMS-P 인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제도로,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형 병원,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업 경영진의 정보보호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현행 인증 기준이 중소기업과 같은 영세 기업에는 인증 취득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24년 7월 24일부터 도입되는 간편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항목을 축소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ISMS-P 간편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외 이미지 제고, 공공부문 입찰 가산점,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 배경
2. ISMS-P 인증제도 (현행)
3. ISMS-P 간편인증제도 (특례제도)
4. 시사점

1. 배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은 각 정보통신망법 제 47조, 시행령 47조~제 54조,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시행되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와 개인정보보호법 제 32조의 2, 시행령 제 34조의 2,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시행되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가 2018년 통합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ISMS-P는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및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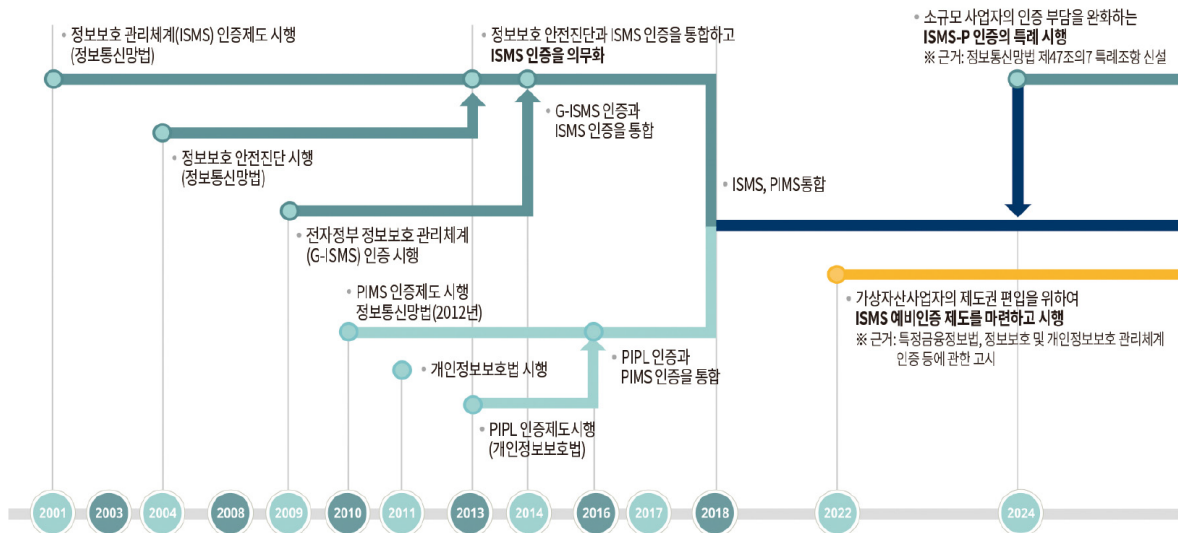


Figure 1 인증제도 추진경과(출처:kisa ISMS-P 인증제도 안내서)

2. ISMS-P 인증제도 (현행)

ISMS-P 인증제도는 주요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기업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정보통신망법 제 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32조의 2)하는 제도로 ISMS 인증을 기본으로,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추가한 ISMS-P로 구분됩니다.

ISMS인증 의무 대상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자,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의 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이고 23년말 기준 911개 기업(의무대상 525개, 자율대상 388개)이 ISMS인증을 유지하고, 226개 기업(자율대상 282개)가 ISMS-P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의무 대상자 기준 |
|------------------------|---|
|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ISP)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IDC)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요건에 따른 대상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 |
| | 전년도 일일평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
| |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ISMS-P 간편인증제도 (특례제도)

현행 ISMS-P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중소기업들이 인증 취득과 유지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2024년 7월 24일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에 해당하는 자는 완화된 인증기준 및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P 인증(간편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인증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며, 전체 의무대상 중 85개 기업(약 16%)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대상자 |
|-----|--|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 2항에 따른 소기업 |
| 중기업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 |
|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나 자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

간편인증의 인증 기준 항목이 축소됨에 따라, 인증 심사 수수료 또한 40~50% 수준으로 줄었고, 인증에 필요한 보안시스템 구축, 조직구성, 컨설팅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현행 인증 | 간편인증 | |
|--------|-----------------------------------|-----------------------|------------------------------------|
| | 전체 기업 (구분 없음) |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 매출 300억원 이상, 주요 정보 통신설비 미보유 중기업 |
| ISMS | 관리체계 수립/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80개) | 40개 | 44개 |
| ISMS-P | ISMS 인증기준(80개) +개인정보 요구사항(21개) | 62개 | 65개 |

4. 시사점

ISMS-P 인증은 일회성의 보안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업 경영진이 직접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편인증 제도의 시행은 기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시켜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 50% 수준으로 절감됩니다. 또한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업의 제반 비용(예: 보안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조직 구성, 컨설팅 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증 수수료 : (ISMS) 800~1,400만원 → 400~700만원 (약 50% 절감)

(ISMS-P) 1,000~1,800만원 → 600~1,100만원 (약 40% 절감)

ISMS-P 인증 취득기관은 대외 이미지 제고, 공공부문 사업 입찰 시 가산점 부여, 개인정보유출시 과징금 감면, 상장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항목 일부대체, 각종 보안점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기업은 자율적인 개인정보/정보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증 및 간편인증 제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근우

T. (+82) 2 6003 7558

센터장/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정한근

T. (+82) 2 6003 7781

고문 E. hkjung@yoonyang.com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수경

T. (+82) 2 6182 8132

파트너변호사 E. sgyi@yoonyang.com

백재환

T. (+82) 2 6182 8366

전문위원 E. jhb@yoonyang.com

지재원

T. (+82) 2 6003 7568

연구위원 E. jwji@yoonyang.com